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 2월 13일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1월 23일, 고영찬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5년 1월 23일
- 다. 상정일자 :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5년 2월 13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강·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특히, 여성청소년뿐만 아니라 남성청소년에게도 청소년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위생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청소년 건강 및 복지 증진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2) 지원대상 및 방법과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3조 및 제4조)
- 3)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조치(안 제5조 및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나. 검토의견

1) 제정 이유

○ 본 제정안은 청소년에게 필요한 기본 위생용품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음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안 제1조 :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2조 : 양성평등에 기초하여 남녀 청소년기에 필요로 하는 위생용품에 대하여 정의함

나) 지원대상 및 방법과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3조 및 제4조)

- 차상위계층,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지원계획 등은 구청장이 수립하도록 규정함

다)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조치(안 제5조 및 제6조)

3)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에 필요로 하는 건강·위생용품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지원 대상과 절차 등을 수립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히, 성별에 차이를 두지 않고 남성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은 보편적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입법으로 확립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며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의 지원내용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서비스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사항임으로 해당 협의가 필요하다 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